

「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9. 8. 1. 개정 판 (시행 2019. 8. 1.) → 2020. 3. 1. 개정 판 (시행 2020. 3. 1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72/compare?from=964&to=965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4:13:05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89조(법인사무조직)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(참여)로 보 한다. (개정, 2011.3.1., 2015.1.22.) ②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재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(참사) 또는 5급(부참사)으로 보 한다. (개정 2011.3.1., 2015.1.22.)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	제89조(법인사무조직)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2급(참여)로 보 한다. (개정, 2011.3.1., 2015.1.22., 2020.02.13.) ②법인사무처에는 총무팀과 재무팀, <u>교원정책팀</u>을 두며 각 팀장은 4급(참사) 또는 5급(부참사)으로 보 한다. (개정 2011.3.1., 2015.1.22., 2020.02.13.)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제92조(하부조직)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, 교무처, 학생처, 기획처, 사무처, 대외협력처, 연구산학처를 두고,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단, 전인교육원, 학술정보원, 국제교육원, 대학일자리본부, 입학관리본부를 둔다. (개정 2009.3.19., 2014.1.17., 2016.01.28., 2018.1.18.) ②교목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대외협력처장, 연구산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, 사무처장은 2급(참여)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 (개정 2009.3.19., 2011.3.1., 2014.1.17., 2015.1.22., 2016.1.28., 2018.1.18.)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, 본부, 부, 과,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. (개정 2009.3.19., 2011.3.1., 2015.1.22.) ④과장팀장 및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(참사)나 5급(부참사)로 보하며, 본부장, 부장 및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(부참여) 또는 4급(참사)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(부참여)로 보한다. (개정 2009.3.19., 2011.3.1., 2015.1.22., 2016.1.28)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09.3.19., 2011.3.1., 2015.1.22.)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(2015.1.22.)	제92조(하부조직)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, 교무처, 학생처, 기획처, 사무처, 대외협력처, 연구산학처, <u>재무실</u>을 두고,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단, 전인교육원, 학술정보원, 국제교육원, 대학일자리본부, 입학관리본부를 둔다. (개정 2009.3.19., 2014.1.17., 2016.01.28., 2018.1.18., 2020.02.13.) ②교목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대외협력처장, 연구산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, 사무처장은 2급(참여)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, <u>재무실장은 3급(부참여)으로 보한다.</u> (개정 2009.3.19., 2011.3.1., 2014.1.17., 2015.1.22., 2016.1.28., 2018.1.18., 2020.02.13.)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, 본부, 부, 과,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. (개정 2009.3.19., 2011.3.1., 2015.1.22.) ④과장팀장 및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(참사)나 5급(부참사)로 보하며, 본부장, 부장 및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(부참여) 또는 4급(참사)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(부참여)로 보한다. (개정 2009.3.19., 2011.3.1., 2015.1.22., 2016.1.28)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09.3.19., 2011.3.1., 2015.1.22.) 제6항 내지 제11항 삭 제 (2015.1.22.)
제97조(하부조직) ① 대학교에 <u>교학처</u>, <u>기획처</u>, <u>산학취업처</u>, <u>사무처</u>, <u>교목실</u>, <u>재무실</u>을 둔다. (개정 2010.5.20., 2012.9.20., 2014.1.17., 2016.1.28.) ②<u>교학처장</u>, <u>기획처장</u>, <u>산학취업처장</u>, <u>사무처장</u>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며, <u>사무처장을 직원으로 보할 경우 직원 중 1인을 2급(참여) 또는 3급(부참여)로 보한다.</u> (개정 2010.5.20., 2011.3.1., 2012.9.20., 2014.1.17., 2015.1.22., 2016.1.28.)	제97조(하부조직) ① 대학교에 <u>혁신기획처</u>, <u>교무입학처</u>, <u>학생성공처</u>, <u>행정지원실</u>, <u>교목실</u>, <u>재무실</u>을 둔다. (개정 2010.5.20., 2012.9.20., 2014.1.17., 2016.1.28., 2020.02.13.) ②<u>혁신기획처장</u>, <u>교무입학처장</u>, <u>학생성공처장</u>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. (개정 2010.5.20., 2011.3.1., 2012.9.20., 2014.1.17., 2015.1.22., 2016.1.28., 2020.02.13.) ③<u>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</u>

현행	개정안
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. (개정 2011.3.1., 2012.9.20., 2016.1.28.)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, 실장은 3급(부참여) 또는 4급(참사)로 보한다. (개정 2011.3.1., 2012.9.20., 2014.1.17., 2016.1.28.)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, 본부, 부, 과,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. (개정 2011.3.1., 2012.9.20., 2014.1.17., 2016.1.28.)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11.3.1., 2012.9.20., 2016.1.28.) ⑦(삭제 2016.1.28.) ⑧(삭제 2016.1.28.) ⑨(삭제 2016.1.28.)	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. (개정 2011.3.1., 2012.9.20., 2016.1.28.)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, 실장은 3급(부참여) 또는 4급(참사)로 보한다. (개정 2011.3.1., 2012.9.20., 2014.1.17., 2016.1.28.)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, 본부, 부, 과,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. (개정 2011.3.1., 2012.9.20., 2014.1.17., 2016.1.28.) 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11.3.1., 2012.9.20., 2016.1.28.) ⑦(삭제 2016.1.28.) ⑧(삭제 2016.1.28.) ⑨(삭제 2016.1.28.)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9조(법인사무조직)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2급(참여)로 보 한다. (개정, 2011.3.1., 2015.1.22., 2020.02.13.)

②법인사무처에는 총무팀과 재무팀, 교원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4급(참사) 또는 5급(부참사)으로 보 한다. (개정 2011.3.1., 2015.1.22., 2020.02.13.)

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2조제1항 중 "연구산학처를 두고,"를 "연구산학처, 재무실을 두고,"로 하고, "2016.01.28.,2018.1.18.)"을 "2016.01.28., 2018.1.18., 2020.02.13.)"으로 한다.

제92조제2항 중 "검보한다"를 "검보하며, 재무실장은 3급(부참여)으로 보한다"로 하고, "2018.1.18.)"을 "2018.1.18., 2020.02.13.)"으로 한다.

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7조(하부조직) ① 대학교에 혁신기획처, 교무입학처, 학생성공처, 행정지원실, 교목실, 재무실을 둔다. (개정 2010.5.20., 2012.9.20., 2014.1.17.,2016.1.28., 2020.02.13.)

②혁신기획처장, 교무입학처장, 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검보한다. (개정 2010.5.20., 2011.3.1., 2012.9.20., 2014.1.17., 2015.1.22., 2016.1.28., 2020.02.13.)

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. (개정 2011.3.1., 2012.9.20., 2016.1.28.)

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, 실장은 3급(부참여) 또는 4급(참사)로 보한다. (개정 2011.3.1., 2012.9.20., 2014.1.17., 2016.1.28.)

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, 본부, 부, 과,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. (개정 2011.3.1., 2012.9.20., 2014.1.17., 2016.1.28.)

⑥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11.3.1., 2012.9.20., 2016.1.28.)

⑦(삭제 2016.1.28.)

⑧(삭제 2016.1.28.)

⑨(삭제 2016.1.28.)

부 칙

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